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68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유한회사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769,180원, 지방교육세 808,390원, 농어촌특별세 438,4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9

가. 원고는 2011. 11. 29.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redacted]은행 소유의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6. 26.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7. 30.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3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법이 아닌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769,180원, 지방교육세 808,390원, 농어촌특별세 438,4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9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가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세목(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인지 알 수 없으며, 각 세목의 세율도 알 수가 없다(원고는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세목별 세액과, 그 근거법령이 포함되어 있는 납세고지서와 함께, 각 세목별 과세표준과 가산세의 종류 및 그 초과일자에 따른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산출내역'을 함께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목과 과세표준, 근거법령, 세율 등이 모두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9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9

관계 법령

▣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한국토지공사"라 한다)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9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